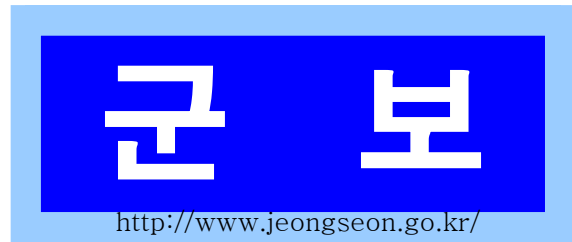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호 2008. 3. 19 (수)

【고 시】

- 정선군고시제2008-10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3
- 정선군고시제2008-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4
- 정선군고시제2008-13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5
- 정선군고시제2008-14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6

【공 고】

- 정선군공고제2008-145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
- 정선군공고제2008-146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공고제2008-15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12
- 정선군공고제2008-152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13
- 정선군공고제2008-153호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공고제2008-157호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 정선군공고제2008-163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2006년 조사농지 처분명령 통보 48
- 정선군공고제2008-164호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 정선군공고제2008-169호 정선(사북)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열람공고 51
- 정선군공고제2008-170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52
- 정선군공고제2008-171호 2008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제거사업 54
- 정선군공고제2008-172호 정선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63
- 정선군공고제2008-17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9
- 정선군공고제2008-178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7
- 정선군공고제2008-179호 무단방치(무적)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103
- 정선군공고제2008-180호 무단방치(무적)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104

정선군 고시 제2008-10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이 창 하	주 소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445번지
하 천 명		임계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448-5번지선(615-5천, 615-7천)		
	허가량	A=951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잡종지		

정선군 고시 제2008-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이 명 희	주 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8-14번지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번지(138-14번지선)		
	허가량	A=80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3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차장 및 관리부지		

정선군 고시 제2008- 13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남 만 기	주 소	정선군 임계면 반천2리 211-1번지
하 천 명		골지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318-4번지선(328-1천)		
	허가량	A=1,830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3월 17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		

정선군 고시 제2008-14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마 강 일	주 소	강릉시 청량동 47-5번지
하 천 명		골지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6번지선		
	허가량	A=9,714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3월 20일 ~ 2008년 12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하상준설		

정선군 공고 제2008-145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3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 되고, 무릉 및 북실 임대아파트가 매각 되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개정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나.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수정 및 삭제 (안 제1조~제3조, 제6조)

－ 광산근로자 ⇨ 군민

－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 정선군 임대아파트

－ 용어의 정의중 “광산업체” 및 “광산근로자” ⇨ 삭제

다. 매각 아파트 위치삭제 및 현 아파트 위치수정 (안 제2조 / 별표1)

－ 위치삭제 : 무릉, 북실 임대아파트

－ 위치수정 (토지합병)

▶ 고한읍 고한리 63, 산257-1번지 ⇨ 고한읍 고한리 63-53번지

▶ 사북읍 사북리 300-9, 303, 304-7번지 ⇨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

라. 입주자격 범위 및 선정방법 수정 (안 제5조, 제6조)

－ 개정전

▶ 광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중 무주택자

▶ 광산 업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정

－ 개정안

▶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군수가 선정 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의거 선정

마. 개정된 관련법령 수정 (안 제9조, 제14조)

-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연체요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
-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주택법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분리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03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재무과(전화 560-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233-804), 팩스 : 033-560-2587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를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1호중 “무주택광산근로자” 를 “무주택 군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급후 공가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광산근로자를”을 “군민을”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의한다.

제9조 제2항중 “별표”를 “별표2”로 하고, 같은조 제6항중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지방재정법, 공동주택관리령,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로 한다.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08-146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3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맞게 일부 개정하여, 임대 아파트관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개정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나.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삭제 및 수정 (안 제1조, 제2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 정선군 임대아파트
- 무주택 광산근로자 ⇨ 무주택 군민

다. 개정된 관련법령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26조 (특별회계 설치)

라.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 "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주택공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 ⇨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 (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03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재무과(전화 560-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편번호 : 233-804)
- 팩스 : 033-560-2587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를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08-15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랐

- 가.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나.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다. 열람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번지 외 9,963호
- 라.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 의견제출

- 가.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나.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다.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마.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4.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나.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 문의 : 군청 재무과 과표팀 ☎ 560-2301, 560-2148~9

정선군 공고 제2008-152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정선군 북면 여량리 149-27 지목 : 대 면적 : 73m²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신 유 선 (한문) 辛 有 善
-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
-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120
-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전 동 근 (한문) 全 東 根
- ⑥ 신청인등록번호 : 281109-1*****
- ⑦ 신청인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46-5
- ⑧ 취득사유 : 매매
- ⑨ 공고기간 : 2008년 3월 10일 ~ 2008년 5월 09일 (2개월)
- ⑩ 통지불가사유 : -
-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8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08-153호

정선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정선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중 농업목적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에 의거 산정하던 것을 토지가격에 의거 산정토록 하고 징수시기도 농지세의 납기 시기에 따르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공유재산대부료 등과 함께 과세표준액을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조세저항 방지 및 다른 사용료등과의 균형유지를 도모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시 농지소득금액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가격 기준으로 적용
- 나.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여 전년도 보다 당해 점용료 등이 10 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단, 골재채취료는 제외)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다. 농업목적으로 점용시 징수시기를 농지세 납기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그 징수 시기는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560-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우편번호 233-804 팩스 033-560-2099)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8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07.06이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text{m}^3/\text{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text{m}^3 \sim 0.5\text{m}^3/\text{초}$ 까지 연액 10,000원 $0.5\text{m}^3/\text{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 제4호의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text{m}^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text{m}^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은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	인근토지가가격의 100분의 5

구 분	산 정 기 준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소하천에 한함)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 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전주, 공중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 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소하천등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것	전 주		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			1,500
		직경 1.0m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			2,250
		직경 1.0m초과			4,500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3조 제3항 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점용료의 1/1,000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	없음

[별표 4]

점 용 료 의 감 면 기 준

감 면 기 준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9.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

[별표 5]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2조의2 관련)

번 호	전년대비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 (증가율-10/100)× 300/1,000}]
2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 (증가율-20/100)× 100/1,000}]
3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 (증가율-50/100)× 60/1,000}]
4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 (증가율-100/100)× 30/1,000}]
5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 (증가율-200/100)× 10/1,000}]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 (증가율-500/100)× 5/1,000}]

[현행 조례]

정선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1996.10.14 조례 제16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④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08-157호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관용차량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2003. 7. 14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관용차량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량정수배정등 관용차량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1호)
- 나. 관용차량의 정수배정시 단위부서의 기능·업무량 ·관할행정구역등을 감안하여 정수를 배정(안 제6조1호)
- 다.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관용차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용차량 직원직접 운전제를 시행하고자 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재무과(☎560-2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제 출 처 : 정선군수 (재무과장)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우편번호 233-804)
 - 팩스 : 033-560-2272

붙 임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관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실효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차량정수관리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의 폐지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① 단위부서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시에는 단위부서의 명칭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10일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차량집중 관리부서 지정)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가 되며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운전원, 차량 및 차량비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중관리부서 및 2차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2조(배차관리)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관리집중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 ①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 ①차량총괄부서의 장 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2호 내지 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장류는 전산입력처리로 대장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차고운영) ①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원 근무수칙

제28조(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금지
2. 운전중 흡연 · 식음 및 휴대폰 사용 금지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 이탈 금지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 이탈 금지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
9.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금지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

11. 동승자,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수수 금지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금지

제30조(운전주의 의무) ①운전원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안전교육 등) 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직원직접 운전차량 지정·운용

제34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차량의 반납)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

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정선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정수배정 또는 교체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 적용)	배 정 대 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수 · 부군수 · 군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기관장 5년)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군수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승 용 (의전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군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단,대형은 5년간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소형승용차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 단위부서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
	소형(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군의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특수용	특수용도 제작차량또는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6년간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및 차 형 및 대 수
승 용 (전 용)	○ 본청 및 군의회 :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승 용 (의전용)	○ 본청 :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승 용 (업무용)	○ 본청 : 2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좌형승용	○ 본청 및 군의회 : 소속공무원 정원 및 업무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직속기관 ·사업소·읍,면 : 소속공무원 정원 및 지역면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및 수 송 용	○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각종 행사인원 수송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기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 업 용	○ 각종 설비탐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 사업용	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정 사업용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사업용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읍면용	사업용 소형으로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 및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기준 정수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싼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노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기타 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정선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정선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정선-가2-10

② 정선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정선-다1-3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⑨

제 목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1.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차량 소속 기관	②차 종	③차 형	④차 명	⑤연 식	⑥사용 부서	⑦요청 정수	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⑨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별지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①인

제 목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정수번호
			()						

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고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①인

제 목 차량교체 승인요청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정수번호
		()							

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규격)	⑤ 연식	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⑨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교환승인요청

1.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종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①차량소속기관		⑨차량소속기관	
②차 종		⑩차 종	
③차 형		⑪차 형	
④차 명	()	⑫차 명	()
⑤연 식		⑬연 식	
⑥용 도		⑭차 대 번 호	
⑦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자 : 지 :	⑮등 록 번 호	
⑧차량등록예정관청		비 고	

※처리요령

-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차 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승인번호 및 일자	②차종 (차형)	③차 명(규격)	④ 연 식	⑤구입가격 (처분가격)	⑥차 대 번 호	⑦등 록 번 호	⑧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⑨정수번 호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기 관 명)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규격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 도	비 고
		문서번호	일 자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 식	차대 번호	취득 구분	등록번호	용 도	취득 가격 (천원)
		승 인 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담당자	담당	과 장	결 재
NO.					
부 서 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신청차종		차량규격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 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 전 원	
배차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유 류		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 ·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앞면>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illegible]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차량 정비 대장

[illegible]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③ 증차수요대수를 판단한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현재 보유차량의 운행 상황을 분석하여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1)
- 2)
- 3)

마. 예산소요 판단

- 1) 총 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1) 지역특수성 :
- 2) 행정 구역 :
- 3) 면 적 :
- 4) 가 구 :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정선군 공고 제2008-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에서 200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처분의무기간을 주어 농업경영을 하거나 처분토록 하였으나, 처분의무기간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조(처분명령)의 규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2006년 조사농지 처분명령 통보
2. 당사자 및 대상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지적
박선애	500707-2*****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03-1번지	전	876
이석철	590214-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 906번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 915-2번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 915-4번지	전 전 전	902 450 263
박종국	430228-1*****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03-3번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03-8번지	전 전	1,322 727
이정자	440504-2*****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03-7번지	전	1,058
박영혜	541030-2*****	강원도 정선군 임계 송계1 941-13번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 송계1 941-15번지	전 전	718 1,720

3. 법적근거 : 농지법 제11조

4. 의견진술기간 : 2008. 3. 10.~ 2008. 3. 26(15일간).

5. 의견진술방법

가. 직접방문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9)

나. FAX 제출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599)

다. 우편제출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제2청사
농업정책과(농지관리팀)

6. 만약,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지정된 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033-560-237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3. 10.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08-164호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됨에 따라 부합되는 관련 조항 및 조문의 불분한 사항을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변경 (안 제3조)

나.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자구 수정 (안 제3조제1항, 안제5조 및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번지,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33-560-2228
- FAX : 033-560-2592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의회”을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 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중 “지방의회”를 각각 “군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169호

정선(사북)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열람공고

정선(사북)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주)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에 따른 실직근로자 및 폐광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주하는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2. 정선(사북)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088	-	81,08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81,088	81,088	
자 연 녹 지 지 역	81,088	감) 81,088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단위 계획구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④	동탄 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일원		증)81,088	81,088	-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o 기정 : 중3-9-12(251m), 기점 중2-2(사북리 72-5임), 종점 소2-1(사북리 300-13대)
- o 변경 : 중3-9-12(118m), 기점 중2-10(사북리 300-13대), 종점 소2-1(사북리 300-13대)
- o 신설 : 중2-10-15(697m), 기점 중2-2(사북리 72-5임), 종점 사업지구 북측 구역계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 및 관련도면 : 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산업경제과, 사북읍사무소
4. 공람기간 : 신문게제일로부터 14일간(2008. 3. 13~2008. 3. 26 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산업경제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산업경제과(☎560-22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08-170 호

개인택시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정선군 개인택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에 따른 양수신청자 접수공고 의뢰가 있어 개인택시를 양수 받고자하는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접수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정기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08.3.12 - 2008.3.26(15일간)

2. 접수장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367)

3. 양도대상차량

- 소 유 주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영동아파트5-107 나동주
- 차량번호 : 강원51바1079호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자는 정선군 관내거주자중 아래조건을 갖춘 자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1) 운전경력

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나)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자가용 및 건설기계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경력의 최초 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자】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이상 거주사실이 있는자

나. 완화적용대상자(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1) 운전경력

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건설기계 포함)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 접수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단,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자 경력에 한함)

다) 사업용,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 접수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단, 자가용 화물,건설기계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하며, 그 경력을 1/2로 환산적용, 합산한 무사고 경력의 최초 운전시점부터 접수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자】

2) 거주기간등

가)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과거 1년간 6개월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나) 공고일로부터 정선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상 과거 6개월이상 거주사실이 있는자

5. 접수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자가용경력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원부,기타입증서류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조건)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도받을수 있습니다.

8. 신청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560-2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08-171호

공 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고사목 제거사업 실행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08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로 주변환경 증진 및 소나무류 재선충병 의심목 오인신고 차단.
3. 사업내용 :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1,223본
4. 사업기간 : 2008. 3 ~ 4월
5. 대상사업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08. 3. 14 ~ 4. 2(20일간)
7. 산주의견 수렴 : 공고기간 내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033-5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

정 선 군 수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정선읍	광하리	142-4	전	30	1		건설부	
정선읍	광하리	1406	구	24	6		건설부	
정선읍	광하리	982-4	임	20	1		재무부	
정선읍	광하리	982-2	도	20	1		건설교통부	
정선읍	광하리	761-1	도	30	5		건설부	
정선읍	광하리	산52-2	임	24	3		건설부	
정선읍	광하리	산226	임	30	6	이금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6번지	
정선읍	광하리	182-2	도	20	4		건설교통부	
정선읍	광하리	1030	전	30	25	홍연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28-1 동보렉스아파트802-804	
정선읍	광하리	산119	임	30	21	정정순	서울시성북구보문동2가64-4	
정선읍	광하리	산152	임	30	22	최종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887번지	
정선군	광하리	산152	임	30	2	최종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887번지	
정선군	광하리	592-4	임	30	24		재무부	
정선군	광하리	산230	임	20	9	윤용문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604 삼보연립303호	
정선군	광하리	182-2	도	26	41		건설교통부	
정선군	광하리	47-2	전	40	2	전영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398-5	
정선군	광하리	68-2	도	24	2		건설교통부	
정선군	광하리	560	전	14	4	최양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469번지	
정선군	광하리	558	전	20	5	전영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1번지	
정선군	광하리	1250	임	18	5	최완석	서울강남구청담동17-14	
정선군	광하리	1259-1	전	20	3		건설교통부	
정선군	굴암리	산180	임	40	2	황병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683	
정선군	굴암리	산196-2	임	26	3		정선군	
정선군	굴암리	167-1	전	30	1		재정경제원	
정선군	굴암리	257	전	40	5	이남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197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정선군	굴암리	산155-1	임	20	6	전종성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81번지	
정선군	굴암리	81	전	20	3	최옥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6-5번지	
정선군	굴암리	17-1	도	50	3		건설부	
정선군	굴암리	산176	임	20	9		미상	
정선군	굴암리	산180	임	30	26	황병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83번지	
정선군	굴암리	산199-1	임	30	1		정선군	
정선군	굴암리	산123	임	20	6		정선군	
정선군	굴암리	산81-1	구	30	1		국(건설교통부)	
정선읍	굴암리	627-1	도	20	26		국(건설부)	
정선읍	굴암리	산70-2	임	30	1		국(건설교통부)	
정선읍	굴암리	649	전	20	5	최용각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761번지	
정선읍	덕송리	347-5	전	20	3	유창현	춘천시 퇴계동945 금오아파트 205-1010	
정선읍	덕송리	396-3	도	24	1		건설부	
정선읍	덕송리	산121-1	임	24	1		건설부	
정선읍	덕송리	산1	임	20	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390-2	
정선읍	덕송리	산176	임	30	5	임병진 외2인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에산리 281	
정선읍	덕송리	363-4	임	20	1	나관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99-1	
정선읍	덕송리	산71	임	20	3	고순갑 외3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415	
정선읍	덕송리	산66-4	임	20	5	안상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76	
정선읍	덕송리	96	전	20	15	안희기	동해시 이로동 424 국민주택2-2	
정선읍	덕송리	101	전	16	8	안중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47-32	
정선읍	덕송리	695	천	30	1		국(건설부)	
정선읍	덕송리	387-4	도	30	6		국(건설부)	
정선읍	덕우리	산47-2	임	40	1		강원도	
정선읍	덕우리	산47-3	임	20	1	최재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53-10	
정선읍	덕우리	산51-2	임	50	1	최종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204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정선읍	덕우리	산94	임	20	1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710	구	20	1		건설부	
정선읍	덕우리	산94	임	18	6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29-4	도	20	1		강원도	
정선읍	덕우리	산62-5	임	40	4		강원도	
정선군	덕우리	산47-5	임	20	4		강원도	
정선읍	덕우리	423-5	도	20	3		강원도	
정선읍	덕우리	51-3	임	30	2		미상	
정선읍	덕우리	산51-1	임	30	1	최종철 외 2인	정선군 북면 여량리149-1	
정선읍	덕우리	산102	임	20	8	문병하 외 5인	광명시 광명동139-20	
정선읍	덕우리	623	전	20	5	김영대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4 미래샘마을 208-604	
정선읍	덕우리	산103	임	14	4	정영규 외 1인	강릉시 교동 191-25	
정선읍	덕우리	산105-3	임	20	26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35	도	10	2		국(건설교통부)	
정선읍	덕우리	550-1	도	10	5		국(건설부)	
정선읍	덕우리	산90-5	임	20	1		강원도	
정선읍	덕우리	710	구	20	8		국(건설부)	
정선읍	덕우리	520-1	대	20	5	유환봉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520-1	
정선읍	덕우리	25-4	전	20	2		미상	
정선읍	덕우리	산67-1	임	20	11	최금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8-1	
정선읍	봉양리	산66-1	임	30	2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67-1	구	40	1		건설부	
정선읍	봉양리	산75-1	임	30	12	하창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1리	
정선읍	봉양리	산88-3	임	20	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41-1	전	20	12		정선군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정선읍	북실리	497-3	대	20	3	김현구	서울강남구일원동611-1공무원아파트 809동814호
정선읍	북실리	518-2	전	20	2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6-1	도	20	1		건설부
정선읍	북실리	산129-6	임	30	34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228-3	임	10	3		미상
정선읍	신월리	산230-1	임	50	1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237	임	60	1	강운배 외 2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233
정선읍	신월리	879-2	전	40	5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337-4	도	30	3		강원도
정선읍	신월리	306-3	임	20	5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4	임	20	4	최승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231
정선읍	신월리	1047-7	도	30	1		강원도
정선읍	신월리	736-2	도	40	1		미상
정선읍	애산리	산114	임	20	56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243	전	20	14		국(건설교통부)
정선읍	여탄리	산90	임	30	1	김종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321
정선읍	여탄리	360	전	20	1	홍성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359
정선읍	여탄리	504	전	20	1	최종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413
정선읍	용탄리	산171-2	임	20	3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71	임	40	1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69-2	임	30	6	전제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754
정선읍	용탄리	산171	임	40	1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67-3	임	20	1		건설부
정선읍	용탄리	174-1	임	40	1		건설부
정선읍	용탄리	산199-2	임	26	5	김여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도수리382-6 대성빌라402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정선읍	용탄리	산202-6	임	20	1	김진호 외 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지촌 A238-108
정선읍	용탄리	1467	구	20	3		건설부
정선읍	용탄리	748-3	도	40	2		건설부
정선읍	용탄리	산171	임	22	22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71	임	20	31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71	임	30	43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67-4	임	20	4	신재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7-706
정선읍	용탄리	산167-2	임	30	5	손복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133
정선읍	용탄리	산72-1도	임	14	1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81	임	20	1	고광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409
정선읍	용탄리	산182	임	14	1	고돈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73-2
정선읍	용탄리	산185-1	임	20	7	전운학 외 1인	미상
정선읍	용탄리	산184	임	30	2	전상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582
정선읍	용탄리	산205	임	50	1	여두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386
신동읍	가사리	394-1	도	30	2		국(건설교통부)
신동읍	가사리	산109-2	임	16	4	김동철	서울 도봉구 창동 27주공아파트 1912-1005
신동읍	가사리	산105-2	임	14	7		국(건설부)
신동읍	고성리	산6-4	임	30	7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5-1	임	30	7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54-1	도	30	1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03-2	도	50	1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6-5	임	40	1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6-2	임	30	2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23-1	임	30	2	이정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88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신동읍	고성리	244-3	전	30	7		미상	
신동읍	고성리	244-1	전	20	3		미상	
신동읍	고성리	241	전	30	3		미상	
신동읍	고성리	230-2	전	30	12		미상	
신동읍	고성리	43-3	전	14	5		미상	
신동읍	고성리	41	전	20	17		미상	
신동읍	고성리	42-12	도	20	1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24-1	도	20	2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53-3	임	20	5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53-3	구	40	3		농림수산부	
신동읍	예미리	528	전	20	45	김조영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550-2	
신동읍	예미리	30-4	도	18	30		국(건설부)	
신동읍	운치리	30-8	전	30	2	정연충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와상리 464-2 풍산햇빛마을아파트101-1104	
신동읍	운치리	30-16	도	30	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1-1	임	30	1	권오홍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A 807동1007호	
신동읍	운치리	51	전	30	1	정희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031	
신동읍	운치리	195-2	전	30	1	정덕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241-76	
신동읍	운치리	226	전	20	2	이재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76	
신동읍	운치리	51	전	20	1	정희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1031	
신동읍	운치리	195-1	전	14	1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75-1	도	20	3		미상	
신동읍	운치리	228	전	18	8		국(환경부)	
남 면	광덕리	산9	임	16	19	임경환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385	
남 면	광덕리	653	전	20	13	심규대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642	
남 면	광덕리	698	전	20	4	박규철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708-1	
남 면	광덕리	485-2	전	30	3		정선군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남 면	낙동리	626	전	30	67	최남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630
남 면	낙동리	28-4	구	20	5		국(건설부)
남 면	낙동리	산120-11	임	20	2		강원도
남 면	낙동리	253-2	도	30	1		정선군
남 면	무릉리	183-3	전	20	1		정선군
남 면	문곡리	산220-2	임	20	2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136 문곡산업주식회사
남 면	문곡리	590-31	천	30	1		국(건설부)
남 면	유평리	387-4	전	30	2	장영선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112-3
남 면	유평리	산60-3	임	20	2		정선군
북 면	고양리	504	구	24	8		농림수산부
북 면	고양리	356	전	24	1	김봉학	강원도 정선군 북면 고양리336
북 면	고양리	504	구	40	1		농림수산부
북 면	고양리	산20	임	50	1	김옥녀	강원도 정선군 북면 고양리329
북 면	남곡리	226	학	20	3		강원도(교육감)
북 면	남곡리	산107-3	임	30	1		건설부
북 면	남곡리	산123-4	임	24	3		건설부
북 면	남곡리	산134-4	임	24	1		농림부
북 면	남곡리	288-1	천	24	1		건설부
북 면	남곡리	261-2	도	20	1		건설부
북 면	봉정리	산81-1	임	26	3		건설교통부
북 면	봉정리	산77-4	임	20	1		건설교통부
북 면	여량리	770	천	26	1		건설부
북 면	여량리	433-1	전	24	2	이종석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320 성도아파트504
북 면	여량리	519-6	전	26	11		정선군
북 면	유천리	산234-2	임	10	2		정선군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성 명	주 소
북 면	유천리	645-3	도	20	4		건설부
북 면	유천리	29-3	도	20	5		건설부
북 면	유천리	산57-2	임	20	16		건설부
임계면	가목리	109-19	전	20	2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09-24	전	34	1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5-5	임	24	2		건설부
임계면	반천리	500-1	도	30	4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1-4	임	26	1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52-2	임	24	1		건설교통부
임계면	반천리	산289	임	24	19	이순우	서울 중랑구 면목동69-20
임계면	반천리	산289-2	임	20	32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69-4	임	24	1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40-3	도	20	1		건설부
임계면	봉산리	산150-7	임	24	1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16-4	임	35	1	김필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863
임계면	용산리	산274	임	30	1	안명규	충북 제천시 화산동422
임계면	직원리	산1-6	임	14	1		건설부
임계면	직원리	산1-66	임	24	1		건설교통부

정선군 공고 제2008-172호

정선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와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처분대수 : 1(일)대
3. 사업 구역
 - 가. 부분일원화 지역(신동읍, 동면,북면, 북평면, 임계면)으로 제한면허
(장기 운전자 순환근무)
4. 공 고 기 간 : 2008. 3. 12. ~ 2008. 4. 10. (30일)
5. 면허신청서 접수기간 : 2008. 4. 11. ~ 2008. 4. 20. (10일간 공휴일 제외)
 - ※ 접수시간 : 근무시간내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접 수 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 (☎ 560-2367, 560-2364)
7. 접수 대상자 :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
우선순위 해당자
8. 신청자격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자
 - 다.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라. 공고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관할구역내에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 이거나 주민등록상 관할구역내에서 과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마.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9. 면허신청시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나. 운전경력증명서 1부. (소정양식 : 정선군 건설도시과에서 배부)
 - ※ 사령부, 봉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되 5년분 첨부
 - 다. 운전정밀신규검사종합판정표 1부(교통안전공단 발행)

- 라.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정선경찰서)
- 마. 건강진단서 1통
- 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4.5cm) 2매
- 사. 정선군 수입증지 16,000원
- 아.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지참 확인용)
 - 택시운전자격증명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 훈 포장, 표창장 등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해당증명 등 (해당자에 한함)

10. 면허대상자 선정

【면허발급 우선순위】

1. 택시를 계속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정선군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중인 자
2.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계속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정선군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중인 자
3. 버스(시·내외버스, 전세버스에 한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불문)
5.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택시를 계속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3년이상 정선군 관내 동일회사에 근무중인 자
 - 나. 버스를 10년이상 정선군 관내 동일회사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자
7.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8. 정선군 관내 관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9.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경력 불문)
10.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정선군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중인 자
11.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자치부장관)의 10년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12.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무중인 자
13.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14. 정선군 관내 관용차량을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15.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
 - 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16. 택시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인인 강력범(강도, 강간, 살인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17.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정선군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중인 자
18.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불문)
19.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1년이상 운전한 자
20. 정선군 관내 관용차량을 11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1.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11. 면허발급

- 개인택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한 자

12. 기타사항

- 가. 운전경력은 공고일 현재 까지만 산정함.
- 나. 면허대상자 선정 결정시 관계법 및 규정에 없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관청(군수)의 결정에 의함.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라. 취업근거서류(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서류, 배차일지등)에 의거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우보증, 업체대표 확인에 의해서 발급한 경우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로서 형사고발하고 경력증명서 허위발급 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및 의법처리함. (형법제231조)
- 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에 한함.
- 사. 상기 공고사항은 인터넷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560-2367, 560-2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번호 :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종별 및 업종	발급시도	종별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취업회사 및 업종	회사명	업종 (해당란에 ○ 표)	택시	법인, 기타
			버스	고속, 일반, 전세, 기타
			화물	일반, 용달, 기타
			기타	
운전경력기간 (발급자확인)	부터 까지		확인	확인
	부터 까지		확인	확인
	부터 까지		확인	확인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인)

위 경력에 상위 없음을 증명함.

발급담당자 성명 : (인)

- 확인자 주소 :

- 회사명(사업자) :

- 대표이사 성명 : (인)

※ 이면 각서에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각 서

상 호 :

대표자 성명 :

당 회사에서(본인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본인이) 비치하고 있는 취업관계 근거서류에 의하여 발급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상 호 :

주사무소 주소 :

대표자 성명 :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08-173호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도로명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3조 ~ 제5조)

- 도로명주소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등을 정함(1/5이상 신청 및 1/2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
-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이장을 통한 2회이상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도로위계별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 절차를 정함
- 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

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 등을 정함
- 사업시행자의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 절차 등을 정함

마.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변동사항 발생시 담당부서에 통보)
- 도로명 부여·변경자료를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사항을 정함

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일제조사에 따른 신청·설치안내)
- 도로명시설의 점검 및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 규정(안 제19조 ~ 제21조)

- 광고사업자의 신청절차 및 계약체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등 규정(안 제22조 ~ 제23조)

-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및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새주소위원회 등 규정(안 제24조 ~ 제32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선군홈페이지(www.jeongseon.go.kr) 공고/공시란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 민원봉사과(전화: 033-560-2182, 팩스: 033-560-2087)

첨부 :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 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정선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정선군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에 있는 업체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군수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 부여기준은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정선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추진을 위해 법 제 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정선군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 업 명				
토지소재				
인 가 내 용	사업구 분			
	사업기 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정선군 공고 제2008-178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이행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0조)

등록시장 3,000㎡이상, 인정시장 1,000㎡이상 개설, 주요시설물관리 상인조직

나.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시장과 상점가가 연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다.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 요건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토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함.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을 정함(안 19조~제22조)

직영 매장 설치자격을 지방자치단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있는 자로 하고, 매장 사용시 50% 감면 가능

마.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제30조)

등록 및 취소는 군수에게 하고, 군수가 요구하는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

바.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제39조)
시설물 소유권 군수에게 있고 상인조직에게 위탁 운영 가능,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서류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임시시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각종 보조사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위로 제출하는 자(안 제40조~제45조)

아. 이 조례 제정으로 시장 사용료 및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으로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산업경제과장, 전화 560-2357,
팩스 56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면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 또는 시장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선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강원도·정선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한 인정시장, 상인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 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정선군 징수관(인)			정선군 징수관(인)			정선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 ×60mm
신문용지 54kg/㎡A80 ×60mm
신문용지 54kg/㎡A80 ×60mm
신문용지 54kg/㎡A80 ×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부 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겠습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정선군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정선군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정선군 금고 귀하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A80×60mm
신문용지 54kg/㎡A80×60mm
신문용지 54kg/㎡A80×60mm
신문용지 54kg/㎡A80×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
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정선군 공고 제2008-179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소탄천	2008소하천 (소탄천)정비	광하리 1047번지	광하리 940번지		571		08.04	08.08	수해피해로부 터주민의생명 과재산을호 호하고주민 들의안정적 영농생활을 하여	손실 보상
고양천	2008소하천 (고양천)정비	여량리 416-1번지	여량리 398-1번지		364		08.04	08.08		“
석산천	2008소하천 (석산천)정비	골지리 산140번지	골지리 128-1번지		210		08.04	08.06		“
			- 이	하	여	백 -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재난안전관리과 비치)
3. 위치도(재난안전관리과 비치)

정선군 공고 제2008-180호

무단방치(무적)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무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경기89가2153, 경북1후1959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8년 03월 27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영월군소재 동강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03월 18일 ~ 2008년 03월 27일(10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무등록 차량 운행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를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